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허위보도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어

Milkovich v. News-Herald 11 Med. L. Rptr. 1598 (1984. 12. 31)

오하이오주 대법원에서 사건파기 환송

사실개요

원고인 마이클 밀코비치는 메이플 고등학교의 전임 수석레슬링코치이다. 원고의 팀이 다른 학교의 팀과 시합을 할 때 선수자격시비로 양 팀간에 싸움이 붙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오하이오주 고교체육연맹(OHSAA)이 심리 후 원고팀의 출전정지 및 원고에 대한 징계를 명했다. 그 후 위 OHSAA의 결정의 유효여부가 군법원에 제소되어 재판결과, OHSAA의 결정이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되었다. 원고는 OHSAA에서의 심리에서는 증언한 바 있지만, 위 군법원에서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 신문사의 스포츠칼럼 필자인 피고 디아디언은 위 재판 다음날 「메이플 고등학교가 대단한 거짓말로 법을 이겼다」는 제목아래, 「원고와 다른 감독자들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난 후 거짓말을 하였다. 메이플 고등학생이나 위 레슬링시합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한가지 교훈을 배운(아니면 다시 배운) 것이다. 그것은 슬프게도,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일찍이 터득한 교훈이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거짓말을 해서 헤쳐나가라. 만약 어느 정도 성공적이고, 권력도 있으며 또한 그럴 듯하게 들리도록만 한다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짓말이 득세하게 할 수 있다. ... 책임있는 교사들은 헤드코치인 마이클 밀코비치(원고)와 감독 도널드 스코트이다. 레슬링 시합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나, 공정한 방청객들은 밀코비치와 스코트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을 것이다. ...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선생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종류의 교훈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심리에 앞서 원고가 공공인물이기 때문에 현실적 악의의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배심재판이 열렸지만 1심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현실적 악의의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의 평결을 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2심은 배심원들이 피고의 현실적 악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파기 환송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주대법원 및 연방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환송심(1심)에서 피고는 의견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워 약식판결(원고 패소)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승소의 약식판결을 하였다. 2심은 원고가 공공인물로서 피고들의 현실적 악의의 입증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사가 헌법상 보호되는 의견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1심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판결요지

1. 아무리 저명한 레슬링코치라 하더라도, 또한 레슬링시합 중 발생한 싸움으로 인한 분쟁에 관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인물이라 할 수 없고, 또한 단순한 주립학교의 교사라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법상의 공무원이라 할 수는 없다.
2. 「사실」에 관한 허위보도는 「의견」의 표현의 경우와 같은 무제한한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판결이유

전원합의부 :

우리가 살피야 할 쟁점은 자유언론이라는 중요한 법익과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필요성과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수정헌법 제 1 조상에 관한 문제이다,

첫째의 쟁점은 상고인 밀코비치가 법률상 「공공인물」(public figure) 또는 「공무원」(public official) 인가 하는 점이다. 피상고인들은 상고인이 초기의 상고심절차에서 그가 공공인물이 아니라는 쟁점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을 정사해보니 상고인은 위 쟁점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쟁점이 적법히 보존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을 배척한다. 명예훼손법상의 상고인의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에 관한 미연방 대법원의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무원은 명예훼손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이하에서는 「뉴욕타임즈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한 기준은 듀플러 대 맨스필드 저널(Dupler v. mansfield Journal, 64 Ohio St. 2d 116, 1980) 사건에서 이 법원에 의해서도 채택된 바 있다. 그 후 로젠블라트 대 베르(Rosenblatt v. Baer, 383 U.S. 75, 1966)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느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실심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률문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커터스출판사 대 버츠(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S. 130, 1967) 사건에서 「공공인물」(public figures)도 포함하도록 뉴욕타임즈 기준을 확장하였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공인물을 그의 지위 자체로 상당한 공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인물 또는 중요한 공공의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고의적 행동으로 스스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대법원은 공공인물들은 문제된 명예훼손의 허위성을 밝히는 반대주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공공인물은 더 엄격한 뉴욕타임즈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로젠블룸 대 메트로메디아(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1971) 사건에서 문제된 사안이 공공의 관심사항일 경우 일반인에게도 뉴욕타임즈 기준이 적용되도록 넓혔다. 로젠블룸사건은 뉴욕타임즈 기준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적용례로서, 대법원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어쨌든, 로젠블룸사건에서 판시된 법률이유는 대법원판사들의 다수 의견을 접하지 못하고 법원내의 반대의견이 표출됐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기준은 장차 더 정제될 필요가 있었다. 만약 로젠블룸사건과 버츠사건이 공공인물 또는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들이라면, 우리는 밀코비치가 공공인물이고 따라서 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뉴욕타임즈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심판결의 견해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말할나위 없이, 일반인에게까지 뉴욕타임즈 기준을 확장한 로젠블룸판결은 거츠 대 로버츠 웰치사(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사건에서 재심사되었고, 대법원은 종전의 판시를 철회하였다. 거츠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1 조상의 자유를 강화하고 보도매체에 의한 자체검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인물 또는 공무원에 대한 뉴욕타임즈 기준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도매체에 의한 자체검열의 방지 필요성이 문제되고 있는 유일한 사회적 가치만은 아님을 밝혔다. 대법원은 개인 명예에 대한 침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개인에 대하여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거츠판결은 공공인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이러한 공공인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자는 사회적 사건에 있어 특별히 현저한 지위를 스스로 떠맡은 사람들이다. 어떤 이들은 매우 설득력 있는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목적에 있어서 공공인물로 간주된다. 더 일반적으로 공공인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문제된 쟁점의 해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특정한 공공논쟁(public controversy)의 최전방에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다.」 거츠사건에서 대법원은 또한 일반인도 특정한 공공의 논쟁에 개입되거나 스스로 관여함으로써 제한된 범위의 쟁점에 있어 공공인물이 될 수 있다고 실시했다. 거츠가 공공인물이 아니라고 판시함에 있어 대법원은 거츠가 일부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졌지만 사회에서 일반적인 명성이나 악명을 취득하거나 사회적 사건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관여를 한 바가 없다고 실시하였다. 2년 후 대법원은 타임 대 파이어스톤(Time, Inc. v. Firestone, 424 U.S. 448, 1976) 사건을 판결하였다. 파이어스톤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공인물에 관한 정의에 관한 거츠사건에 있어서의 판시를 재확인하면서, 원고인 파이어스톤 부인이 거츠판결에 따라 공공인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파이어스톤부인이 400 명의 팜비치 사회에서는 저명한 인물이고, 스크랩 신문의 독자였기 때문에 인쇄물에 자신의 이름이 자주 오르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혼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공인물로서의 지위에 관한 거츠판결상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파이어스톤 부인에 대한 이혼심판이 거츠판결이 예상한 「공공의 논쟁」의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더 최근에 대법원은 허친슨 대 프록스마이어(Hutchinson v. Proxmire, 443 U.S. 111134, 1979) 사건과 월스톤 대 리더스다이제스트사(Wolston v. Reader's Digest Assn., Inc., 443 U.S. 157 164, 1979) 사건에서 거츠판사의 공공인물에 관한 정의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상고인들은 고등학교 레슬링계에서 밀코비치가 쌓은 업적과 명성에 비추어 하급심들이 그를 공공인물이라고 지적한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상고인들은 버츠나 밀코비치가 모두 저명한 체육인으로서 관계된 분야에서 상당한 악명을 얻었다는 점에서 버츠사건이 이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버츠와 마찬가지로 밀코비치도 공공인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항소심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하였다.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거츠사건과 그 후속판결에서 판시된 공공인물의 지위에 관한 재정의를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류중인 이 사건에 거츠판결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밀코비치가 수정헌법 제 1 조의 분석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공공인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상고인이 그의 코치로서의 업적으로 인하여 그 사회에서 인정 내지는 존경을 받는 인물일지는 몰라도 그러한 업적 때문에 그가 상당한 권력이나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의미에서 상고인의 지위로 인하여 그가 공공논쟁의 최전방에 놓이게 되고 그가 그 논쟁의 해결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인이 비록 소속 팀의 멘터고등학교와의 레슬링시합 및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논쟁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상고인은 결코 그 결정에 영향을 가하기 위하여 스스로 적극 개입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상고인이 레슬링코치로서의 광고를 함으로써 공공인물로서의 생활을 자초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만약 사정이 그렇다면 순전히 영업적 목적을 위한 광고가 널리 퍼지기만 하였다면 어떤 개인이라도 공공인물이라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츠」 아래의 공공인물에 관한 정의에 따르는 경우, 상고인의 지위는 버츠사건에 있어서의 체육감독의 지위보다는 전술한 파이어스톤사건에서의 원고의 지위와 흡사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상고인이 공립 고등학교의 선생과 코치로서의 직업 때문에 공무원(public official)에도 해당한다는 피상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 연방대법원은 로젠블라트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정부의 활동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 내지 권한을 가졌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계급상의 직위에 있는 자이어야 함은 명백하다.」 로젠블라트판결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상고인이 명예훼손법상의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피상고상들은 국민학교 레슬링코치가 공무원이라고 판시한 존스톤 대 코린시안 텔레비전사(Johnston v. Corinthian Television Corp., 583p. 2d 1101, Okla, 1978) 판결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공무원의 개념을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과장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여하간 우리는 공무원에 대한 로젠블라트판결의 정의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 아래서의 상고인과 같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명예훼손법에 있어, 그리고 뉴욕타임즈사건과 거츠사건 및 그 후속사건의 분석에 있어, 이 사건의 상고인은 법률상 공공인물이나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시한다. 환송심에 있어 사실심은 전술 듀플러사건에서 판시된 법리보다는 엠버스 만찬 구락부 대 스크립스하워드 방송사(Embers Supper Club, Inc.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9 Ohio St. 3d 22, 1984)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에 따라 심리하도록 지시한다.

II

상고인이 수정헌법 제 1 조의 범주에 있어 사적인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초점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기사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만약 허위인 경우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주장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급심들은 문제의 기사가 필자의 「가슴에서 우러난」(heartfelt) 의견을 표현하였고, 따라서 법률상 제소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전술한 거츠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우리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수정헌법 제 1 조 아래서는 그릇된 사상(false idea)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악한 의견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서는 법관이나 배심원들의 양심보다는 다른 사상들과의

경쟁에 의존한다.……」 많은 법원들이 위 설시를 명예훼손법에 있어 의견의 표명에 관하여는 헌법상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예컨대 오르 대 아구스 언론사(Orr v. Argus Press Co., 586 F. 2d 1108, C. A. 6, 1978) 사건판결에서 법원은 비록 노사분쟁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거 대 지방노조(Yeager v. Local Union, 6Ohio St. 3d 369, 1983) 사건에서처럼 다른 의미들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사용된 경우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의 표상이고 따라서 보호된다고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무엇이 의견의 표현이고 무엇이 사실의 표현이냐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채택한 바는 없다. 어떤 법원들은 사실의 주장과 의견의 주장을 구별하기 위하여 「진실 또는 허위」(truth or falsity)의 기준을 변형시켜 적용하여 왔다. 예컨대 버클리 대 릿텔(Buckley v. Littell, 539 F. 2d 882, C. A. 2, 1976) 사건에서처럼 그러한 접근방법에 따르면 문제된 서술이 경험적으로 허위라고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서술을 평가하게 된다. 다른 법원들은 사실과 의견의 구별을 「보통 사람」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분석하여 왔다 ; 즉, 보통의 독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기사를 읽었을 때 이를 필자의 의견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겠느냐 또는 현존 사실의 서술이라고 이해하겠느냐 하는 기준이다. 우리는 무엇이 보호받은 의견이고 무엇이 구제 가능한 사실주장이냐를 그 자체로써 결정하는 무슨 기준을 정립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문제된 기사가 필자의 「가슴에서 우러난」 의견에 불과하다는 하급심들의 판시는 부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 문제된 기사가 법률상 사실의 주장이며, 필자의 의견의 경우와 같은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한다. 그 기사의 어느 부분도 독자들에게 필자의 서술이 그의 심사숙고된 의견에 불과하다고 미리 주의를 준 바 없다. 필자의 주장이 단순히 뜻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밀코비치가 법정에서 위증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 쟁점에 관한 원심을 파기함에 있어 우리는 시안시 대 뉴타임즈출판사(Cienci v. New Times Publishing Co., 639F. 2d 54, C. A. 2, 1980) 사건에 있어서 프랜들리 대법원판사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원용한다 :

「만약 필자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단순히 '나는...라고 생각한다'(I think)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소추를 회피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법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판결이유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사실심으로 환송한다. 셀레브리지 대법원장, 스위니, C. 브라운, J. P. 셀레브리지 대법원판사가 이에 반대하고, W. 브라운 대법원판사가 반대하며, 로처, 흄즈 대법원판사가 별개로 반대한다.